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7일, 박성민의원 등 10인

나. 회 부 일 자: 2025년 3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5.09.09.) 상정, 축조심사, 의결
(수정가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25.) 상정, 소위심
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성민의원)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 총괄 검토

가. 법률안의 주요내용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기본법」이 시행됨(2021. 9. 24. 시행)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개별법에서 별도로 규율되고 있는 행정제도 관련 조항들을 「행정기본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동 법률안은 크게 ① 인가·허가 등의 의제(이하 “인허가의제”라고 한다) 제도의 효과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② 즉시강제, 과징금, 이행강제금 규정, ③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하고, 이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거나 특례를 부여하려는 경우 이를 명시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됨.

[표 1] 정비대상 법률 및 정비내용

연번	개정법률	준용 및 정비 내용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인허가의제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즉시강제

연번	개정법률	준용 및 정비 내용
3	광업법	인허가의제
4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인허가의제
5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과징금 / 이행강제금 이의신청
6	산업융합 촉진법	이의신청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인허가의제 이행강제금
8	산업표준화법	제재처분기간 상한 명시
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이의신청
10	송유관 안전관리법	인허가의제
11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이의신청
12	유통산업발전법	인허가의제
13	전기사업법	인허가의제
14	전시산업발전법	인허가의제
15	집단에너지사업법	인허가의제
1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인허가의제
17	한국가스공사법	인허가의제
1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

나. 입법 배경 및 필요성

기존 행정법 체계에서는 행정 분야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 없

이 개별법마다 서로 유사한 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 국민이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제도 개선시에도 개별법의 관련 규정을 일일이 찾아 정비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음.

「행정기본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일원화된 규범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리보호 및 일선공무원의 업무상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3월 23일에 제정(2021. 9. 24.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개별법에 기존 조문이 삭제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행정기본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실제 법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기본법」의 입법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예를 들어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은 인허가의제시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4항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일관성·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행정기본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법률안들이 21대 국회에서 발의·일부 의결되었고(참고1 참조) 22대 국회에서도 유사 법률안이 재발의(참고2 참조)되어 있으며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도 같은 취지에서 재발의된 것으로 보임.

동 법률안에서 정비하고자 하는 「행정기본법」상 관련 규정을 각 살펴보면 ① 인허가의제 효과를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가 된 사항으로 한정하고,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제출 의무 및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 의무·협의 기간·협의 간주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행정절차법」은 「행정기본법」에 따른 인허가의제시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관련 인허가 처분기준을 통합·공표하도록 함.

[표 2] 「행정기본법」 및 「행정절차법」상 인허가의제 관련 조항

연번	정비 관련 조항
1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연번	정비 관련 조항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2	「행정기본법」 제25조(인허가의제의 효과) ① 제24조제3항·제4항에 따라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3	「행정기본법」 제26조(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①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된 인허가가 있는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5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의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행정절차법」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공표) ② 「행정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의 처분기준을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제출받은 관련 인허가의 처분기준을 통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리고 「행정기본법」은 ②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관련 규정, 이행강제금 부과시 입법사항, 가중감경기준 및 절차, 즉시강제 원칙 및 집행절차 등을 규정하고, ③ 처분불복시 이의신청 기간(30일) 및 행정청 처리기간(14+10일), 행정쟁송 등 다른 제도와 연계 등을 규정하고 있음.

[표 3] 「행정기본법」상 각종 정비 관련 조항

연번	정비 관련 조항
1	「행정기본법」 제29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행정기본법」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이행강제금 부과에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부과·징수 주체 2. 부과 요건 3. 부과 금액 4. 부과 금액 산정기준 5.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2.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3. 그 밖에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

연번	정비 관련 조항
	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3	「행정기본법」 제33조(즉시강제) ①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즉시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하며,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행책임자는 즉시강제를 하려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강제를 실시한 후 집행책임자의 이름 및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한 공고로써 고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즉시강제를 실시한 후에도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국외에 거주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고지할 수 없는 경우
4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연번	정비 관련 조항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3.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5.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6.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다. 종합

현재 기본법인 「행정기본법」이 시행 중임에도 여전히 인허가의제의 기준·효과·절차,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이의신청 대상·기간·처리 기간 등 행정제도 관련 규정들이 개별법에 산재하고 있으며 내용에 따라서는 「행정기본법」과 상이한 경우도 있으므로,

동 법률안은 개별법에서 「행정기본법」을 준용하거나 이에 부합하게 규정을 개정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례를 명확히 부여하여 일반 국민의 행정법 적용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특히 개별법에서 인허가의제 효과의 범위를 행정기관 간 미리 협의한 사항으로 한정하지 않은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법률상 권한을 침해하고 의제되는 인허가에 대한 협의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어 「행정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인허가의제 협의 기간이나 이의신청 및 처리 기간 등 개별법이 규율하는 분야의 특성에 따라 「행정기본법」의 규정대로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기존의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사례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명확하게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 관계가 불명확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법률안을 통해 행정법 체계를 정비하고 법률간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임.

2. 법안별 검토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허가의제 조항 정비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한 인허가의제 효과의 범위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정하고(안 제11조제1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제출 기간 및 처리기준 통보 규정을 삭제하며(안 제11조제2항후단 및 제3항 삭제), 「행정기본법」 및 「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표 4]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u>경우에</u> 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u>한다</u>)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 ----- ----- <u>경우</u> - ----- ----- <u>한다</u>)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 -----.
1. ~ 39. (생략)	1. ~ 39.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	② -----

현 행	개 정 안
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생략)	----- ----- ----- ----- --- 한다. <후단 삭제> <삭 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하고,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③ (현행 제5항과 같음)

현행법 및 시행령은 ①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다른 법률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의제 규정을 두고 있고(제1항), ② 시·도지사의 협의 요청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제출 기간을 20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본문 및 시행령¹⁾), ③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제2항 단서).

한편,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①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만 발생하고,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제출 기간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며, ③ 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리고 현행법은 의제되는 인허가의 처리기준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제3항 및 제4항), 이는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과 유사중복되는 내용의 규정임.

이에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의 인허가의제 규정 및 「행정절차법」의 처리기준 설정·고시 규정을 준용하여 인허가의제 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으로, 명확한 법 적용을 통해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행정기본법」의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인가·허가 등의 의제절차)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즉시강제 규정 준용 명시

개정안은 고압가스 시설등의 이전·사용정지·제한 및 고압가스 폐기 등의 강제조치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33조(즉시강제)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24조제4항 신설).

[표 5]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4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2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3조에 따른다.</u>

현행법 제24조는 허가관청 등이 고압가스에 의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제1항), 위해발생 또는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설 등의 이전·사용정지·제한, 시설 내 고압가스의 폐기 등의 명령 또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제2항),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3항)2).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4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①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등록을 한 자 또는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사용의 시설이나 용기등(이하 이 항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등의 이전·사용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그 시설등의 안에 있는 고압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설등을 봉인할 수 있다.

그리고 현행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행정강제 중 급박한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미리 의무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 없이 즉시 시설 등을 봉인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동 법률에 따른 조치 중 즉시강제를 취하는 경우가 있고 해당 조치가 「행정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려는 취지로 보임.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해당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허가의제 조항 정비

개정안은 채굴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인허가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협의절차·기간 등의 중복조항은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43조).

[표 6]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허가 등의 의제) ①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해제 및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3조(허가 등의 의제) ①----- ----- ----- -----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2조제2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이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③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삭 제>

현행	개정안
<u>날부터 20일 이내(관련 허가등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u>	

현행법은 채굴계획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을 받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 다른 법률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의제 규정을 두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의 요청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제출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고 있으며,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행정기본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의 인허가의제 규정을 준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인허가의제 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으로 명확한 법 적용을 통해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행정기본법」의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라.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허가의제 조항 정비

개정안은 사업계획 승인 등에 따른 인허가의제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의견제출기간 등 「행정기본법」과 상이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표 7]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제13조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경우, 그 사업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결정·인가·협의 또는 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 ----- ----- ----- ----- 인·허가 등의 ----- 미리 협의 한 사항에 대해서는 ----- ----- ----- ----- -----.
1. ~ 29. (생략)	1. ~ 29.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삭 제>

현행	개정안
받으려는 자가 사업계획의 승인(변경 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전략계획수립권자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의 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② (현행과 같음) ③ 인·허가등의 ----- 제2항----- ----- ----- -----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현행법은 전략계획수립권자³⁾가 사업계획⁴⁾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는 경우 관련 인·허가등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제1항), 인허가의제를

3)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전략계획수립권자”란 제9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4)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3조(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 ①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제1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받으려는 자는 관련 서류를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제2항),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관련 인허가 의제가 필요한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제3항), 관계 기관장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제4장).

그런데 현행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제출 기한은 30일 이므로 「행정기본법」에 따른 제출기한 20일보다 길게 규정되어 있고, 현행법 제15조제2항은 인허가의제 절차(서류제출)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기본법」과 중복⁵⁾되는 내용이며, 현행법 제15조제3항⁶⁾은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역시 「행정기본법」과 중복⁷⁾되는 내용임.

이에 개정안은 「행정기본법」과 다르거나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기본법」 제24조~제26조를 준용하려는 내용으로, 이에 따라 인허가의제 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15조제3항도 「행정기본법」과 중복

5)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6)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7)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되는 규정이므로 추가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 과징금 조항 정비

개정안은 「행정기본법」과 동일·중복되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허용 요건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 제29조단서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12조).

[표 8]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무역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무역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1. 재해나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2. 무역 등 경제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납부기한 <u>연장과 분할 납부</u> 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u>연기와</u> ----- ----- -----

현행법 제12조는 무역위원회가 과징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⁸⁾인 경우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 제29조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음.

[표 9] 「행정기본법」상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제29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u>다만, 행정청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u>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8)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과징금의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따라서 개정안은 법문언상 표현(연장→연기)을 정비하고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며 「행정기본법」 제29조단서를 준용하여 과징금 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으로, 명확한 법 적용을 통해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행정기본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이행강제금 조항 정비

개정안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방법에 대해서도 「행정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기존 중복 조항을 삭제 또는 변경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표 10]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이행강제금) ① (생략)	제13조의2(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물품등 가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u>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u> ③ <u>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u> ④ <u>무역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u> ⑤ <u>제1항에 따른 해당 물품등 가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⑥ <u>무역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한 기간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u>	③ <u>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u> <삭 제> <삭 제> <삭 제>

현행법 제13조의2는 이행강제금 부과근거(제1항), 계고의무(제2항 → 기본법제3항), 통지내용(제3항 → 기본법제4항), 의무이행시 징수중지(제4항 → 기본법제5항), 물품가액 산정기준(제5항), 징수방법(제6항 → 기본법제6항)을 규정하고 있음.

[표 11] 「행정기본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부과·징수 주체

2. 부과 요건

3. 부과 금액

4. 부과 금액 산정기준

5.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2.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3. 그 밖에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이 중 「행정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근거(제1항) 및 물품가액 산정기준(제5항)은 동 법률에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고,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가중감경 기준도 적용됨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리고 개정안은 계고의무, 통지사항 등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현행법 조문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제6항을 적용함을 명시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으로, 명확한 법 적용을 통해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행정기본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이의신청 처리기간 등에 대한 특례 부여

개정안은 현행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신청·처리기간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고 그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14조).

[표 1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이의신청) ①·② (생략)	제14조(이의신청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현행법 제14조제1항은 무역위원회의 처분 중 잠정조치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현행법 제14조제2항은 무역위원회가 이의신청을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에 결정하도록

함.

[표 13] 현행법상 이의신청

제14조(이의신청) ① 제7조제2항,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제7조제2항(잠정조치)
2.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제10조(시정조치), 제11조(과징금), 제13조의2(이행강제금)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어 조사에 추가로 시일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르면 행정처분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고, 행정청은 14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에서 한차례 연장)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므로, 현행법은 「행정기본법」보다 이의신청기간(14일)을 짧게, 결과통지기간(60일)을 길게 규정하고 있음.

[표 14]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신청기간 및 통지기간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⑦ (생략)

현행법상 신청·처리기간을 종전과 같이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면, 우선 잠정조치는 무역위원회의 판결·조사종결 전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임시로 취하는 조치이고 조사는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필요시 2개월씩 2회 연장 가능)에 마무리되어야 한다⁹⁾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잠정조치는 조사 종결 전에 임시로 취하는 조치이고 조사 또한 조속하게 마무리되어야 하므로, 이의신청시 신청기간을 일반적인 처분보다 짧게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9)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판정 및 통지 등) ① 무역위원회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를 끝내고 판정하여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2회 연장할 수 있다.

1. 조사 중인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하여 소송 또는 특허심판 등 관련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조사 내용이 복잡하거나 당사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처분 상대방의 경우에도 집행정지 신청, 본안소송 제기 등의 사법적 쟁송 수단이 있고 무역위원회 판결·조사종결 결과에 따라 법률 관계가 확정된 후에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14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유지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무역위원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는 대부분 특허권 침해 여부 등 기술적·법리적 쟁점에 대한 고도의 판단이 요구되고 절차상 무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서 상당 기간이 소요되므로 현행법과 같이 60일의 처리 기간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해 보임.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개정안은 이의신청시 신청기간 및 처리기간상 특례를 명시하고, 그 외의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를 따르도록 하여 법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규율하였으므로, 법체계 정합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바.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의신청 신청기간 특례 부여 등

개정안은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 특례를 부여하고 이의신청 처리기간은 연장 없이 14일 이내로 제한(「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단서 제외)하며,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 제36조를 준용하려는 것임(안 제15조).

[표 15]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신청한 제조자등은 적합성 인증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5조(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 ----- ----- -----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 -----.
② (생략) <신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우선, 안 제15조제1항과 관련하여 현행법 및 그 시행령은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과 관련하여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¹⁰⁾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신청기간을 제한함.

그런데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 기간을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 기간과 관련하여 「행정기본법」과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이 불일치하고 있음.

산업융합 분야의 특성상 행정청의 처분 결과를 다투면서 자기방어를 위해 필요한 자료 등을 충분하게 준비하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개정안 및 현행 시행령과 같이 이의신청 기간을 「행정기본법」보다 길게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안 제15조제3항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단서¹¹⁾를 제외하고 동법 제36조를 적용하고자 하는데 이는 행정청이 반드시 14일 이내로 조속하게 이의신청을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10)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이의신청서에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1)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⑦ (생략)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¹²⁾은 제품의 시장 출시와 관련이 있어 조속한 분쟁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 적합성 인증을 심사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이미 6개월이라는 충분한 심사 기간을¹³⁾ 부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 처리 기간을 「행정기본법」과 같이 14일로 하면서 10일의 연장 기회를 줄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즉,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개정안은 산업융합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의신청시 신청기간 및 처리기간에 관한 특례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외 관련 사항은 「행정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명확한 법 적용을 통해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행정기본법」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12) 「산업융합 촉진법」

제11조(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① 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된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합성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 사본을 즉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산업융합 신제품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산업융합 신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13)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적합성 인증 등) ① 제12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심사를 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로서 산업융합 신제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에 맞거나 적용할 수 있는 기준·규격·요건 등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2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를 거쳐 지체 없이 적합성 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허가의제·이행강제금 규정 준용

개정안은 공장설립등 승인 등, 공장 건축허가·신고, 공장건축물 사용 승인, 공장등록,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구조고도화사업계획승인 시 인허가의제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따르고, 인허가의제 처리기준의 고시는 「행정절차법」 제20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며,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 상한 등은 동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등).

[표 16]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 ④ (생 략)	제13조의2(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⑤ ----- ----- ----- ----- ----- -----

현행	개정안
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u>제13조의4제2항에 따라</u> 고시된 처리기준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생략) ⑦ <u>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u> ⑧ (생략) <u><신설></u> <u>제13조의4(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① 제13조의2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u> <u>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처리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u> <u>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① ~ ④ (생</u>	-----. ---- <u>제13조의4</u>----- -----. ⑥ (현행과 같음) <u><삭제></u> ⑦ (현행 제8항과 같음) ⑧ <u>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u> <u>제13조의4(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제13조의2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의 제출 및 통합 고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u>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① ~ ④ (현행

현행	개정안
략)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4조의2(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 ④ (생략)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장의 등록) ① ~ ⑩ (생략) ⑪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0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⑫ (생략) <신설>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14조의2(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16조(공장의 등록) ① ~ ⑩ (현행과 같음) <삭제> ⑪ (현행 제12항과 같음) ⑫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등 또는 변경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현행	개정안
등의 의제) ① 관리기관·관리권자 또는 시·도지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결정·인가·협의를 또는 승인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33조제6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변경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등의 의제) ① ----- ----- ----- ----- ----- ----- ----- ----- ---- 관하여 제3항에 따라 ----- ----- ----- ----- -----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3조의3(이행강제금) ① (생략)	제43조의3(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같은 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② 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양도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③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양도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⑤ 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양도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관리권자는 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업무를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 ④ (생략)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관리권자는 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업무를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삭 제> <삭 제> 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현 행	개 정 안
⑥ (생 략) <신 설>	⑤ (현행 제6항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즉,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조문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이 인허가의제 규정, 처리기준 고시, 이행강제금 관련 절차 규정 등을 준용하려는 내용임.

[표 17] 주요 개정 내용

주요 개정 내용	조문번호	기존 조문 내용
행정기본법 인허가의제 준용	제13조의2	공장설립등의 승인 등 인허가의제와 협의 절차 (관계기관 의견제출기간 10일)
행정절차법 관련인허가 처분기준 고시 등 준용	제13조의4	→ 제13조의2 인허가의제 관련, 관계 행정기관 처리기준 고시
	제14조	공장 건축허가·신고시 인허가의제와 협의 절차 (관계기관 의견제출기간 10일)
	제14조의2	공장건축물 사용승인시 검사등 의제 (관계기관 의견제출기간 10일)
	제16조	공장등록시 등록등 의제 (관계기관 의견제출기간 10일)
	제33조의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시 인허가 의제 (관계기관 의견제출기간 15일)
	제45조의4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관계기관 의견제출기간 15일)
행정기본법 이행강제금 관련 절차 준용	제43조의3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우선, 인허가의제 및 처리기준 고시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13조의2는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자에 대한 사도개설허가시 농지전용신고 등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현행법 제13조의4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시 인허가의제 관계기관은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도록 함.

그런데 「행정기본법」과 관계기관 협의절차 규정이 중복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현행법 제13조의2제7항을 삭제하는 한편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법적용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리고 관계기관의 처리기준 제출 및 통합고시에 관해서도 「행정절차법」 14)에 이미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해당 규정을 준용하고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개별법에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두지 않고 법체계상 정합성 및 간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은 그 외에도 현행법 제14조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

14) 「행정절차법」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공표)

② 「행정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의 처분기준을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제출받은 관련 인허가의 처분기준을 통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3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 제45조의4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와 관련하여 의제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법적용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현행법 조문별로 인허가의제시 관계기관의 의견제출기간을 살펴보면, 각각 10~15일로 규정되어 「행정기본법」상 20일보다 짧은데, 개정안은 기존 의견제출기간을 각각 유지하면서 인허가의제 기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임.

동 법에 따라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등이 그 특성상 일반적인 의견제출기간(20일)보다 빠르게 관계 기관장의 의견제출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인허가의제 제도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청인을 신속하게 지원하려는 취지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의견제출기한을 10~15일로 유지하는 것이 신청인의 권리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43조의3제1항은 이행강제금 부과근거¹⁵⁾를 규정하면서 「행정기본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부과·징수 주체, 부과요건, 부과금액 및 산정기준을 규율하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이행강제금) ① 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양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 제4항은 매년 1회 반복 징수하도록 규정하여 「행정기본법」에 따라 법률로 명시하도록 한 사항을 모두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그 외에 현행법 제43조의3제2항, 제3항 및 제5항은 각각 행정청의 계고, 서면통지 의무 및 이무이행시 부과중지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임.

이에 개정안은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조문번호 등을 정비하며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모두 적용하려는 내용이므로, 법적용 관계 및 국민의 권리보호를 명확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지조치기간 상한 명시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표시 정지 또는 판매정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지조치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함(안 제21조).

[표 18]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9조제6항 또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받은자에게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하거나, <u>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u> ,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는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별로 인증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일부 사업장에 대한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일부 사업장에서의 판매의 정지를 포함한	제21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① ----- ----- ----- ----- ----- ----- ----- ----- <u>인증표시의 제거, 6개월 이내의 인증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u> ----- -----. ----- ----- ----- ----- -----.

현행	개정안
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인증표시 정지 또는 판매정지와 같은 제재처분을 하면서 정지기간 상한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 별표1의2에서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시행령에 따르면 위반행위 유형 및 횟수에 따라 표시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또는 판매정지 3개월, 6개월을 각각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이는 근거법률에서 제재처분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는 「행정기본법」 제22조에 부합하지 않음.

[표 19] 「행정기본법」에 따라 법률에 규정해야 하는 제재처분 기준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요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는 법률유보 원칙 및 「행정기본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과 같이 인증표시 정지 또는 판매정지 처분이 6개월 이내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의신청 규정 정비

개정안은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또는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시 「행정기본법」 제36조를 따르도록 명시하고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8조 등).

[표 20]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 ① ~ ⑥ (생략)	제18조(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현행	개정안
⑨ (생략) 제37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① ~ ⑥ (생략) ⑦ 석유대체연료의 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충당, 과다환급금의 징수 및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8조제7항·제8항,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 중 “제18조”는 “제37조”로,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보고, 제19조의2 중 “제19조”는 “제37조”로 보며, 제20조 중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는 각각 “제37조”로 본다.	⑨ (현행과 같음) 제37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제18조제7항 ----- ----- ----- ----- ----- ----- -----.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르면 행정처분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고, 행정청은 14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에서 한차례 연장)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함.

한편, 현행법 제18조제7항은 「행정기본법」과 동일하게 부과금 또는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현행법 제18조제8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5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에서 연장)에 결정 및 결과통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현행법과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 처리기간이 각각 ‘15일 이내’와 ‘14일 이내’로 일부 상이한 상황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행정기본법」과 동일하게 단축하여 신청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그 외 규정도 모두 「행정기본법」 제36조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법적용 관계의 통일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차.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허가의제 규정 정비

개정안은 공사계획인가 등에 따른 인허가의제시 그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 협의의무 등 중복규정을 삭제하며 일부 자구를 정비함(안 제4조).

[표 2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허가 등의 의제) ①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 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허 가·인가·면허 또는 지정(이하 “허 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 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 으로 본다.	제4조(허가 등의 의제) ① ----- ----- ----- ----- ----- 허가등의 ----- ----- 미리 협의한 사 항에 대해서는 -----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 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그 공사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 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송유관의 설치공사계획 인가 또는 변경인가¹⁶⁾를 할 때 관계 기관장과 협의한 경우, 도로점용허가, 농지 전용허가 등¹⁷⁾을 함께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음.

개정안은 「행정기본법」 제24조~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행정기본법」 제24조제3항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이에 따라 법체계 정합성이 제고되고 국민이 법률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여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6)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공사계획의 인가 등) ① 송유관의 설치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 재해복구공사, 그 밖의 긴급한 공사를 하었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송유관설치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생 략)

17)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2.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4.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6. 삭제 <2010. 4. 15.>
7. ~ 15. (생 략)

카.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의신청 규정 준용

개정안은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시 「행정기본법」 제36조를 적용하는 것을 명시하고 이와 중복·상충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24조의6).

[표 2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의6(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u>제24조의2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u> ②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u>	제24조의6(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현행법은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¹⁸⁾을 부과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처리결과를 15일 이내에

18)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부과·징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서면통보하도록 함.

그런데 이는 「행정기본법」 제36조와 내용이 대부분 중복되고, 「행정기본법」상 처리기한은 14일(필요시 10일 내 범위에서 1회 연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소 상이함.

[표 23]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⑦ (생략)

개정안은 「행정기본법」과 중복·상충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 제36조를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허가의제 규정 준용 등

개정안은 대규모점포등 등록시 허가등의 의제,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시 인허가의제에 관하여 각각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까지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되,

관계 기관장의 협의간주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제24조제4항 후단 제외), 기간공동집배송센터 지정에 따른 인허가의제시 관계 기관장 의견 제출기간은 예외적으로 30일로 규정함(안 제9조 및 제30조).

[표 24]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허가등의 의제 등) ①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신고·지정·등록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허가등의 의제 등) ① ----- ----- ----- ----- ----- 허가등의 관계 ----- -----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 --.
1. ~ 17. (생략)	1. ~ 17. (현행과 같음)
② 허가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신청시에 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

현행	개정안
<u>출하여야 한다.</u> ③ <u>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 서류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u> 제30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승인·인가·협의·해제·지정 및 심사(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정한 결과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15. (생략) ②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지정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u>	<u>조까지(같은 법 제24조제4항 후단은 제외한다)에 따른다.</u> <u><삭 제></u> 제30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 ----- ----- ----- ----- 인 · 허가등의 관계 ----- 미리 협정한 결과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 서는 ----- ---. 1. ~ 15. (현행과 같음) ② <u>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u>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같은 법 제24조제4항 후단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우선, 「행정기본법」과는 현행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30조제2항이 관련 인허가 서류 제출,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 의무 규정 등이 중복되므로,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고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려는 내용임. 이에 따라 인허가의제제도를 「행정기본법」과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개정안은 「행정기본법」 제24조제2항후단¹⁹⁾, 즉 의견제출기간이 도과하면 관련 인허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제외하고 준용하는데, 협의 간주 규정을 제외한 것은 대규모점포등 등록 및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시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의견을 보다 신중하게 반영하려는 취지로 보임.

대규모점포 등록시 관련 인허가²⁰⁾는 대부분 영업 신고·등록에 관한

19)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20) 대규모점포등 등록시 관련 인허가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 「게임산

사항이고,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시 관련 인허²¹⁾가는 농지전용허가 등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개발행위 허가 등에 관한 내용인데,

-
- 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게임제공업 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또는 등록
2.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3.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식품의 제조업·가공업·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의 신고
 5.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신고
 6. 「평생교육법」 제35조제2항 전단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설치의 신고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9.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1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11.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1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 승계의 신고
 1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
 14.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5.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16.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약국 개설의 등록
 1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안경업소개설의 등록

21)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시 관련 인허가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신고
3.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 또는 신고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하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점용 허가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개축·증축 또는 변경의 허가
8.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9. 「하수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1.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2.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의 허가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점포의 규모, 대상 등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관련 인허가시 관계 기관장이 이에 당연히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협의 간주조항을 제외하고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관계 기관장의 의견제출기간과 관련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의 경우 관계 기관장의 의견제출기간 규정이 별도로 없지만,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에 대해서는 의견제출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있음²²⁾.

그러나 「행정기본법」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계 기관장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견 미제출시 협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현행 시행령과 불일치하고 있음.

공동집배송센터 건립이 토지이용 등 대규모 개발행위를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제출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축소할 경우 의견제출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의제되는 인허가에 대한 사항의 검토 및 협의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2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협의기간) 법 제30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개정안은 관련 인허가에 대한 협의 간주 조항을 제외하고 「행정기본법」의 인허가의제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며 이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인허가의제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으로, 명확한 법 적용을 통해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행정기본법」의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르고,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삭 제> ② 인·허가등의 ----- ----- 제1항----- ----- ----- ----- -----. <삭 제>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전기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관계 기관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인허가등²³⁾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데 관련 인허가 서류 제출, 관계 기관장 협의 의무, 협의간주 규정 등은 이미 「행정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인허가의제의 기준·효과 등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따르도록 명시하며 중복된 내용은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명확한 법 적용을 통해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행정기본법」의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23) 「전기사업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6. ~ 21. (생략)

하.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허가의제 규정 준용 등

개정안은 「행정기본법」과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시시설 건축 허가·건축신고·사용승인에 따른 각종 인허가의제시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중복·관련 조문을 정비하되, 관계 기관장의 의견제출 기한을 예외적으로 15일로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27조).

[표 26]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전시시설 건축시 허가 등의 의 제) ① <u>전시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동의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u>	제27조(전시시설 건축시 허가 등의 의 제) ① <u>전시시설에 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u> ----- ----- 같 은 법 제11조제5항 ----- ----- ----- ----- 관하여 허 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 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전시시설에 대하여 시장, 군수 또	② -----

현행	개정안
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검사 또는 신고(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3. (생략) ③ 허가등 및 검사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시설의 건축허가신청 및 건축신고와 사용승인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령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 ----- 같은 조 제4항 ----- ----- ----- ----- 관하여 검사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 -----. 1. ~ 3. (현행과 같음) ③ 허가등 및 검사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및 검사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현행법은 전시설설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이 관계 기관장과의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점용허가,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²⁴⁾, 전시설설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 전용상수도의 수질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음²⁵⁾.

한편, 「행정기본법」에 이미 관련 인허가 서류 제출, 관계 기관장 협의의무 등의 규정이 마련되었으므로, 개정안은 이에 맞춰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자구를 정비하고, 그 외 기준·효과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다만, 개정안은 관계 기관장의 의견제출기한을 현행과 같이 15일로 「행정기본법」상 20일보다 짧게 규정하고자 하는데,

인허가의제제도는 신청자에게 조속하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할 때, 현재 관련 인허가가 15일 이내에 검토 가능한 사항이라면, 「행정기본법」과 같이 20일로 협의기간을 연장할 필요는 낮은 것으로 보임.

24) 현행법 제27조제1항 각호에 따른 “허가등”

1.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2.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동의
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5) 현행법 제27조제4항 각호에 따른 “검사등”

1. 「수도법」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전용상수도의 수질검사 등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따라서 동 개정안은 의견제출 기한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 「행정기본법」의 인허가의제 규정을 준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인허가의제 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으로, 명확한 법 적용을 통해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행정기본법」의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허가의제 규정 준용 등

개정안은 「행정기본법」과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사계획 승인 등에 대한 인허가의제시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하고, 중복·관련 조문을 정비하되, 관계 기관장의 의견제출기한을 예외적으로 30일로 규정함(안 제49조).

[표 27]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지정·협의·신고 또는 면허(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u>제2항에 따라</u>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u>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u>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 ----- ----- ----- ----- 인 · 허가등의 ----- 미 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 -----.
1. ~ 18. (생략)	1. ~ 18. (현행과 같음)
②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사업자의 공사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u>	② <u>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현 행	개 정 안
<u>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u>

현행법은 공급시설의 공사계획²⁶⁾ 승인에 대한 인허가의제를 규정하면서 관계 기관장은 시행령 제28조²⁷⁾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0일(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

그런데 「행정기본법」은 관계 기관장의 의견제출 기간을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르면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보다 협의기간이 짧아지게 됨.

관계 기관장의 의견제출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축소할 경우 의견제출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관련 인허가에 대한 검

2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43조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7)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8조(협의기간) 법 제49조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협의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토 및 사전협의를 부실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의견제출 기간은 현행 시행령과 동일한 30일로 규정 하되(안 제49조제2항),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의 인 허가·의제 규정을 준용하여 인 허가·의제 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으로, 명확한 법 적용을 통해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행정기본법」의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허가의제 조항 정비

개정안은 「행정기본법」과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허가의제의 기준·효과 및 처분기준 공표를 각각 「행정기본법」 제24조~제26조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따르도록 하고 중복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2조).

[표 28]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u>경우에는</u>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결정·허가·승인·심사·인가·신고·면허·등록·협의를 지정·해제 및 처분 등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대부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 ----- ----- <u>경우</u> ----- ----- ----- ----- ----- ----- - <u>한다</u>)에 관하여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u>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u> -. ----- ----- -----.
1. 삭제	
2. ~ 8. (생략)	2. ~ 8.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경우 실시계획의 사업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에 의견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⑥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및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삭제>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④ 제3항-----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하고,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삭제>

현 행	개 정 안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삭 제>

현행법은 시행자가 진흥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법률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행정기본법」 및 「행정절차법」에 이미 관계 기관장과의 협의, 처분기준 공표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인허가의제 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으로 명확한 법 적용을 통해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행정기본법」의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더.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허가의제 조항 정비

개정안은 가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승인에 따른 인허가 의제시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의견제출기간을 20일이 아닌 45일로 규정함(안 제17조).

[표 29]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u>공사가 제16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 또는 인정(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u>	제16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① <u>공사가 제16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인정 또는 협의(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았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u>
1. ~ 18. (생략) <u><신설></u>	1. ~ 1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

현 행	개 정 안
	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45일”로 한다.

현행법은 한국가스공사가 가스사업을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고(제16조의2²⁸⁾), 사업실시계획 승인시 도로점용허가, 사도개설허가 등의 각 호의 인·허가등도 받은 것으로 봄(제16조의3).

「행정기본법」 제24조~제26조에 이미 인허가의제의 기준, 효과,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의 통일적인 적용을 위하여 이를 준용하고자 함.

그리고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만 발생하지만, 현행 「한국가스공사법」은 한국가스공사가 가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당

28)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공사는 제11조에 따른 사업 중 천연가스의 인수·저장·생산·공급 설비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가스사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구역, 사업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가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연히 다른 법률의 허가등을 받았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인허가의 제 규정을 두고 있음.

따라서 「행정기본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인허가의제 효과가 한정되도록 개정안과 같이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 「한국가스공사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가스사업구역 내에 건축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45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하는데²⁹⁾³⁰⁾, 「행정기본법」은 이를 20일로 규정하고 있어 서로 상충함.

현행 법령은 가스사업 구역 내 협의기간을 통상적인 경우보다 길게

29)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4(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의2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도로·철도·교량·운하·수도 및 수로와 그 부속물의 설치
2. 하천유수(河川流水)의 진로 변경, 하천 또는 해수면의 매립 및 준설(浚渫),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과 어업권·양식업권의 설정
3.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
4. 토지의 개간, 지반의 굴착·매립,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

30)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

제14조의6(행정기관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절차)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획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으로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규정하는 것은, 가스사업 구역이 가스관 매설, 고압가스 저장시설 설치 등으로 인해 환경·안전성 검토범위가 넓고 기술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도로점용허가, 사도개설허가 등의 인허가에 대해서도 가스사업 구역에서는 보다 긴 기간동안 협의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행강제금 조항 준용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고 중복규정을 삭제·정비함(안 제11조의5).

[표 30]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5(이행강제금) ①·② (생략)	제11조의5(이행강제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의4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삭 제>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현행법은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기준에 맞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군·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현행법 제11조의5제1항 및 제2항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³¹⁾하려는 것으로, 「행정기본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따라 부과·징수 주체(시·군·구청장), 부과 요건(시정명령 불이행), 부과금액(3천만원 이하) 및 부과금액 산정기준(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라 산정, 세부기준은 대통령

3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5(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령 위임)을 명시하고 있고, 현행법 제11조의5제5항은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연간 부과 횟수나 횡수의 상한(매년 1회 반복)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현행법 제11조의5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시 근거법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조문번호만 정비(⑤→③ 조문이동)하는 한편, 그 외 제3항, 제4항, 제6항 및 제7항은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제6항에 따른 내용을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제6항을 준용함을 명시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이므로, 명확한 법 적용을 통해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행정기본법」의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며. 부칙

안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안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인·허가 등의 의제 협의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함.

[표 31] 법률안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허가등 의제를 위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우선, 법률안의 내용은 대부분 행정절차를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내용이고, 대부분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은 현행과 같이 유지되어 안 부칙 제1조와 같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법률안에 따라 일부 조문번호를 개정할 필요³²⁾가 있으므로, 시행령 개정

32) 「산업집적법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제56조의3(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업무 위탁기관) ① <u>법 제43조의3제6항에서</u>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56조의3(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업무 위탁기관) ① <u>법 제43조의3제3항에서</u> ----- ----- -----.

에 소요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해당 개정규정에 대해서만 시행일을 연기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허가의제시 관계 기관장의 의견제출기한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있으므로,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안 부칙 제2조와 같은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의견제출기한 단축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표 32] 부칙 수정의견 예시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허가등 의제를 위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참고1

행정법제 혁신 일괄정비법안 제21대 의결 현황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 발의	발의일	의결일자	의결결과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119105)	조은희 의원	2022. 12. 23	2024. 02. 29	수정가결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119101)	조은희 의원	2022. 12. 23	2024. 05. 29	임기만료폐기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119100)	조은희 의원	2022. 12. 23	2024. 05. 29	임기만료폐기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119143)	이용의 원	2022. 12. 27	2023. 04. 27	수정가결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119254)	이인선 의원	2022. 12. 29	2024. 05. 29	임기만료폐기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119238)	이용호 의원	2022. 12. 29	2023. 04. 27	수정가결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119327)	임이자 의원	2023. 01. 04	2024. 01. 09	수정가결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119391)	윤한홍 의원	2023. 01. 10	2023. 08. 24	수정가결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119458)	박정하 의원	2023. 01. 12	2023. 12. 08	수정가결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119528)	박정하 의원	2023. 01. 17	2024. 05. 29	임기만료폐기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119670)	박성중 의원	2023. 01. 27	2024. 05. 29	임기만료폐기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119826)	김영선 의원	2023. 02. 03	2024. 02. 29	수정가결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 발의	발의일	의결일자	의결결과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119923)	정경희 의원	2023. 02. 09	2024. 05. 29	임기만료폐기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119952)	이양수 의원	2023. 02. 10	2023. 06. 30	수정가결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119951)	이양수 의원	2023. 02. 10	2023. 04. 27	수정가결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120144)	신원식 의원	2023. 02. 21	2023. 12. 28	수정가결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120979)	강기윤 의원	2023. 03. 29	2024. 05. 29	임기만료폐기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120973)	강기윤 의원	2023. 03. 29	2024. 05. 29	임기만료폐기

참고2

행정법제 혁신 일괄정비법안 제22대 발의 현황

의안명 (의안번호)	발의일	대표 발의	소관 위원회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204436)	'24.9.30.	최형두 의원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 위원회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205751)	'24.11.21.	권영진 의원	국토교통 위원회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208259)	'25.2.18.	조은희 의원	행정안전 위원회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208261)	'25.2.18.	조은희 의원	행정안전 위원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 내용

(소위원장 김원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기간 특례 등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준용 표현 등을 통일하
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함.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
었음.

※ 심사보고서 불입서류

1.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
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9.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수정이유

「행정기본법」 또는 「행정절차법」의 인허가의제 관련 규정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려는 경우 각각 ‘따른다’와 ‘준용한다’로 일관성있게 표현되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인허가의제 관련 규정도 다른 개정안과 같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효과가 발생함을 명시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하며, 시행령 개정이 수반되는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단서를 신설함.

수정주요내용

가. 적용 및 준용 표현 통일(안 제1조, 제4조 등)

나. 관계기관의 장과 사전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인허가의제효과 발생함을 명시(안 제7조)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안 부칙 제1조단서 신설)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한다)”를 “한다)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르고,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에 따라”를 “인·허가등의”로, “협의를 사항에 대하여는”을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4항) 중 “전략계획수립권자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을 “인·허가등의”로, “협의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를”을 “미리 협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제13조의4제2항에”를 “제13조의4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4(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제13조의2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의 제출 및 통합 고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한”을 “미리 협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한”을 “미리 협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

지에 따른다.

제1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를”을 “미리 협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등 또는 변경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하여”를 “관하여 제3항에 따라”로, “협의를”을 “미리 협의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4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양도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관리권자는 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업무를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

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제4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를”을 “미리 협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안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전기사업법」의 개정)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을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에도 불구하고”를 “인·허가등의”로, “제3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르고,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안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한다)”를 “한다)에 관하여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르고,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안 부칙 제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1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u>경우에는</u>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 ----- ----- ----- ----- <u>경우</u> ----- ----- ----- ----- ----- ----- ----- <u>한다)에 관하여</u> <u>시·도지사가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u> ----- ----- ----- -----.	제11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 ----- ----- ----- ----- <u>경우</u> ----- ----- ----- ----- ----- ----- ----- <u>한다)에 관하여</u> <u>시·도지사가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u> ----- ----- ----- -----.
1. ~ 39. (생략)	1. ~ 39. (현행과 같음)	1. ~ 39.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	② ----- -----	② ----- -----

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 한
다. <후단 삭제>

<삭 제>

----- 한
다. <후단 삭제>

<삭 제>

<u>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u> <u>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u> <u>⑤ (생략)</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의 제의 기준·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하고,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u> <u>③ (현행 제5항과 같음)</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의 제의 기준·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르고,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u> <u>③ (현행 제5항과 같음)</u>
--	---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제13조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경우, 그 사업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결정·인가·협의 또는 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 ----- ----- ----- ----- ----- ----- ----- ----- -- <u>인·허가등의</u> - ----- - <u>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u> ----- ----- ----- ----- ----- -----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 ----- ----- ----- ----- ----- ----- ----- ----- -- <u>인·허가등의</u> - ----- - <u>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u> ----- ----- ----- ----- ----- -----

시나 공고를 한 것
으로 본다.

1. ~ 29.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인
·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가 사업
계획의 승인(변경승
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때에는 사
업계획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
련 서류를 함께 전
략계획수립권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③ (생 략)

④ 전략계획수립권
자로부터 협의를 요
청받은 관계 행정기
관의 장은 협의요청
을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

-----.

1. ~ 29.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③ 인·허가등의 -

----- 제2항-----

-----.

1. ~ 29. (현행과 같
음)

<삭 제>

③ 인·허가등의 --

----- 제2항-----

은 제3항에 따른 협의의 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 ----- ----- ----- ----- ----- -----. ④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에서 규정한 사 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 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 24조부터 제26조까 지를 준용한다.	----- ----- ----- ----- ----- ----- -----. ④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에서 규정한 사 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 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 24조부터 제26조까 지에 따른다.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3조의2(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해당 공장 및 진입로 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 (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u>협의한</u> 사항 (제5항 단서에 따라 협의가 생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의2(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 ----- ----- ----- ----- ----- ----- ----- ----- ----- ----- ----- ----- ----- ----- <u>미리 협의한</u> ----- ----- ----- ----- ----- -----.

⑦ <u>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u>	<u><삭 제></u>	<u><삭 제></u>
⑧ (생략)	⑦ (현행 제8항과 같음)	⑦ (현행 제8항과 같음)
<u><신 설></u>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13조의4(공장설립 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① 제13조의2제1항 각 호(같은	제13조의4(공장설립 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제13조의2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3조의4(공장설립 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제13조의2제1항 각 호(같은 항

<u>항 제1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인·허가등의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u> <u>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처리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u> 제14조(공장의 건축 허가)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	<u>제1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의 제출 및 통합 고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u> 제14조(공장의 건축 허가) ① (현행과 같음)	<u>제1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의 제출 및 통합 고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u> 제14조(공장의 건축 허가) ① ----- ----- ----- ----- -----
---	--	--

은 것으로 의제되
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
고를 수리(제13조
의2제1항 제15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
가 및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해
당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허가·인
가·승인·동의·
심사 또는 신고(이
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
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
하여는 해당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미리 협의한

본다. 1. ~ 1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 한 기간(「민원 처 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 라 회신기간을 연장 한 경우에는 그 연 장된 기간을 말한 다) 내에 의견을 제 출하지 아니하면 협 의가 이루어진 것으 로 본다.</u> 제14조의2(공장건축 물의 사용승인)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의 2제1항에 따라 공 장설립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또 는 건축신고를 의 제 받은 자 및 제1	1. ~ 1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제1항부터 제4항 까지에서 규정한 사 항 외에 허가등 의 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 정기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u> 제14조의2(공장건축 물의 사용승인) ① (현행과 같음)	-----. 1. ~ 1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제1항부터 제4항 까지에서 규정한 사 항 외에 허가등 의 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 정기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u> 제14조의2(공장건축 물의 사용승인) ① ----- ----- ----- ----- ----- ----- -----
---	--	---

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검사·신고·동의 및 신청(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검사등을 한 것으로 본다.

1.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
한 기간(「민원 처
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
라 회신기간을 연장

1.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
까지에서 규정한 사
항 외에 검사등 의
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
정기본법」 제24조

미리

협의 한

1.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
까지에서 규정한 사
항 외에 검사등 의
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
정기본법」 제24조

<u>한 경우에는 그 연 장된 기간을 말한 다) 내에 의견을 제 출하지 아니하면 협 의가 이루어진 것으 로 본다.</u>	<u>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u>	<u>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u>
제16조(공장의 등록) ① ~ ⑤ (생략)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 설립등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등록·신고 및 허가(이하 이 조에서 “등록등”이 라 한다)에 관하여 제9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u>협의한</u> 사항에 대 하여는 다음 각 호 의 등록등을 한 것 으로 본다.	제16조(공장의 등록)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공장의 등록)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 ----- ----- ----- ----- ----- ----- <u>미리 협의한</u>----- ----- ----- -----.

1. ~ 19. (생 략) ⑦ ~ ⑩ (생 략) ⑪ <u>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0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u> ⑫ (생 략) <u><신 설></u>	1. ~ 19. (현행과 같음) ⑦ ~ ⑩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⑪ (현행 제12항과 같음) ⑫ <u>제6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등 또는 변경허가등 의 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u>	1. ~ 19. (현행과 같음) ⑦ ~ ⑩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⑪ (현행 제12항과 같음) ⑫ <u>제6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등 또는 변경허가등 의 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u>
---	---	---

라 관리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변경승인 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 에 따른 인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 ----- ----- ----- -----.	----- ----- -----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1. ~ 10.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설>	<u>⑥ 제1항부터 제5항 까지에서 규정한 사 항 외에 인가등 의 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 정기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u>	<u>⑥ 제1항부터 제5항 까지에서 규정한 사 항 외에 인가등 의 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 정기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u>
제43조의3(이행강제 금) ① (생략)	제43조의3(이행강제 금) ① (현행과 같 음)	제43조의3(이행강제 금) ① (현행과 같 음)
<u>② 관리권자는 제1 항에 따른 이행강제 금을 부과하기 전에 같은 항에 따른 이</u>	<u>② 관리권자는 제43 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른 처분·양도 의무가 발생한 날을</u>	<u>② 관리권자는 제43 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른 처분·양도 의무가 발생한 날을</u>

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③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양도의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관리권자는 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업무를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관리권자는 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업무를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u>징수할 수 있다.</u> <u>⑤ 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양도의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u> <u>⑥ 관리권자는 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업무를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u> 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 그 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대한 다음 각	<u><삭 제></u> <u><삭 제></u> 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 ----- ----- ----- -----
--	---	---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

<삭 제>

<작 제>

<u>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u> <u>⑥ (생략)</u> <u><신설></u>	<u>⑤ (현행 제6항과 같음)</u> <u>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u>	<u>⑤ (현행 제6항과 같음)</u> <u>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u>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illegible]

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21.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

----- 인·허
가등의 관계 행정기
관의 장과 미리 협
의한 -----

1. ~ 21.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제1항 및 제2항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
제의 기준·효과 등
에 관하여는 「행정
기본법」 제24조부
터 제26조까지에 따

----- 인·허
가등의 관계 행정기
관의 장과 미리 협
의한 -----

1. ~ 21.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제1항 및 제2항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
제의 기준·효과 등
에 관하여는 「행정
기본법」 제24조부
터 제26조까지에 따

면 미리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
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
청을 받은 날부터 2
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
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
루어진 것으로 본
다.

⑤ 제4항에도 불구
하고 관계 행정기관
의 장은 제3항에 따
른 협의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필

르고,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
하여는 「행정절차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
20조제2항 중 “처분
기준”은 “처리기준”
으로, “공표”는 “고
시”로 본다.

<삭 제>

② 인·허가등의 -

----- 제1항-----

르고,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
하여는 「행정절차
법」 제20조제2항
을 준용한다. 이 경
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
분기준”은 “처리기
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삭 제>

② 인·허가등의 -

----- 제1항-----

요로 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 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⑥ <u>산업통상자원부</u> <u>장관은 제1항에 따</u> <u>라 의제되는 인·허</u> <u>가등의 처리기준을</u> <u>관계 중앙행정기관</u> <u>으로부터 제출받아</u> <u>통합하여 고시하여</u> <u>야 한다.</u>	----- ----- ----- ----- ----- ----- --- <u><삭 제></u>	----- ----- ----- ----- ----- ----- --- <u><삭 제></u>
---	--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2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진흥지구 의 개발계획에 대하 여 시행자가 실시계 획의 승인을 받은 <u>경우에는</u> 「지역 개 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결정·허가·승인 ·심사·인가·신 고·면허·등록· 협의를 지정·해제 및 처분 등 외에 다 음 각 호의 허가· 신고·대부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u>한다</u>)을 받은 것으 로 본다. 이 경우 「지역 개발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 따 라 실시계획이 고시 되었을 때에는 관계	제12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 ----- ----- ----- <u>경우</u> ----- ----- ----- ----- ----- ----- ----- ----- ----- ----- ----- <u>한다</u>)에 <u>관하여 실시계획의</u> <u>승인권자가 인·허</u> <u>가등의 관계 행정기</u> <u>관의 장과 미리 협</u> <u>의한 사항에 대해서</u> <u>는 해당 인·허가등</u> --. -----	제12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 ----- ----- ----- <u>경우</u> ----- ----- ----- ----- ----- ----- ----- ----- ----- ----- ----- <u>한다</u>)에 <u>관하여 실시계획의</u> <u>승인권자가 인·허</u> <u>가등의 관계 행정기</u> <u>관의 장과 미리 협</u> <u>의한 사항에 대해서</u> <u>는 해당 인·허가등</u> --. -----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 ----- -----.	----- ----- -----.
1. 삭 제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2.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경우 실시계획의 사업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에 의견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u>	<u><삭 제></u>	<u><삭 제></u>
④ (생 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u>제4항에 따른 인</u>	④ <u>제3항</u> -----	④ <u>제3항</u> -----

· 허가등 의제 협의
회의 구체적인 구성
· 기능 및 운영,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항 및 「지역

-----.

⑤ 제1항부터 제4항
까지에서 규정한 사
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
정기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하고, 처리기준
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
차법」 제20조제2
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
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 리 기 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삭 제>

-----.

⑤ 제1항부터 제4항
까지에서 규정한 사
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
정기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르고,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
하여는 「행정절차
법」 제20조제2항
을 준용한다. 이 경
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
분기준”은 “처리기
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삭 제>

<u>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u> <u>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u>	<u><삭 제></u>	<u><삭 제></u>
---	---------------------------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한다)”를 “한다)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3항으로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르고,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제2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3조에 따른다.

제3조(「광업법」의 개정)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을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4조(「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의 개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에 따라”를 “인·허가등의”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을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4항) 중 “전략계획수립권자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을 “인·허가등의”로, “협의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5조(「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연장과”를 “연기와”로 한다.

- ① 무역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물품등 가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제14조의 제목 “(이의신청)”을 “(이의신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6조(「산업융합 촉진법」의 개정)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해당”을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으로 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7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한”을 “미리 협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제13조의4제2항에”를 “제13조의4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

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4(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제13조의2제1항 각 호 (같은 항 제1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의 제출 및 통합 고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를한”을 “미리 협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를한”을 “미리 협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1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를한”을 “미리 협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등 또는 변경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하여”를 “관하여 제3항에 따라”로, “협의를”을 “미리 협의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4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양도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관리권자는 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업무를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제4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를”을 “미리 협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8조(「산업표준화법」의 개정)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를 “인증표시의 제거, 6개월 이내의 인증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로 한다.

제9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 ⑦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37조제7항 전단 중 “제18조제7항·제8항”을 “제18조제7항”으로 한다.

제10조(「송유관 안전관리법」의 개정)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에 따라”를 “허가등의”로,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을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11조(「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6(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12조(「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에 따라 다른”을 “허가등의 관계”로,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을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같은 법 제24조제4항 후단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에 따라 다른”을 “인·허가

등의 관계”로, “협의를 결과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을 “미리 협의를 결과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같은 법 제24조제4항 후단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3조(「전기사업법」의 개정)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을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에도 불구하고”를 “인·허가등의”로, “제3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르고,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제14조(「전시산업발전법」의 개정)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시시설에 대하여”를 “전시시설에 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로,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제5항”을 “같은 법 제11조제5항”으로, “관하여”를 “관하여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제4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관하여”를 “관하여 검사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허가등 및 검사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및 검사등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15조(「집단에너지사업법」의 개정)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에 따라”를 “인·허가등의”로,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을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 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16조(「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한다)”를 “한다)에 관하여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

의 기준·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
까지에 따르고,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
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
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제17조(「한국가스공사법」의 개정)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6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사가 제16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인정 또는 협
의(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인·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
당 인·허가등을 받았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며, 산업통상부장
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의3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45일”로 한다.

제18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

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허가등 의제를 위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u>경우에는</u>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u>한다</u>)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 ----- ----- <u>경우</u> ----- ----- ----- <u>한다</u>)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 -----.
1. ~ 39. (생략)	1. ~ 39.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② ----- ----- ----- ----- ----- ----- ----- <u>한다. <후단 삭제></u>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생략)

<삭 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르고,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③ (현행 제5항과 같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4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2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 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 법」 제33조에 따른다.</u>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3조(허가 등의 의제) ①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해제 및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3조(허가 등의 의제) ①----- ----- ----- ----- ----- <u>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u>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②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2조제2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이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u>	② <u>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u>
③ <u>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관련 허가등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걸리는 기간</u>	<u><삭 제></u>

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
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
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를 된 것으로 본
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제13조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경우, 그 사업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결정·인가·협의를 또는 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u>제3항에 따라</u>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u>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u>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 ----- ----- ----- ----- ----- ----- ----- ----- <u>인·허가등의</u> ----- <u>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u> ----- ----- ----- ----- ----- -----.
1. ~ 29. (생략)	1. ~ 29.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가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에</u>	<u><삭 제></u>

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전략계획수립권자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의 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② (현행과 같음)

③ 인·허가등의 -----

--- 제2항-----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의 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무역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과징금 납부의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나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2. 무역 등 경제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면	제12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무역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 납부
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3조의2(이행강제금) ① (생
략)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
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
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
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
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구체
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
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10조제1항
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

② ----- 연기와 -----

-----.

제13조의2(이행강제금) ① (현행
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물품등
가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
지에 따른다.

<삭 제>

<u>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u> ⑤ 제1항에 따른 해당 물품등 가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무역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이의신청)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u><삭 제></u> <u><삭 제></u> 제14조(이의신청 <u>특례</u>)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1조제1항 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신청한 제조사등은 적합성 인증과 관련 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 청을 할 수 있다.	제15조(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 ----- ----- ----- 적합성 인 증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에 해당 ----- -----.
② (생 략)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 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 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에 따른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인가·허가 등의 의 제)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 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해당 공장 및 진입로 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면 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 다)에 관하여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u>협 의한</u> 사항(제5항 단서에 따라 협약이 생략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 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의2(인가·허가 등의 의 제) ① ----- ----- ----- ----- ----- ----- ----- ----- <u>미리 협 의한</u> ----- ----- ----- ----- -----.
1. ~ 18. (생략)	1. ~ 1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하거나 제2항에 따 라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 도개설 등의 허가를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 및 제3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⑤ ----- ----- ----- ----- ----- ----- -----

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고시된 처리기준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생략)

⑦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⑧ (생략)

<신설>

제13조의4(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① 제13조의2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을 마

-----.
----- 제13조의4-----

-----.

⑥ (현행과 같음)

<삭제>

⑦ (현행 제8항과 같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13조의4(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제13조의2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의 제출 및 통합 고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

런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처리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제13조의2제1항제15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동의·심사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
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
표”는 “고시”로 본다.

[illegible]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16. (생략)

② ~ ④ (생략)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4조의2(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 받은 자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검사·신고·동의 및 신청(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검사등을 한 것으로 본다.

1. ~ 1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14조의2(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

-----미리

협의한-----

_____.

⑪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0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삭 제>

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⑫ (생략)

<신 설>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기관·관리권자 또는 시·도지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결정·인가·협의를 승인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⑪ (현행 제12항과 같음)

⑫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등 또는
변경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
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
가·허가 등의 의제) ① -----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협의한-----

여는 해당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33조제6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변경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 10. (생략)

② ~ ⑤ (생략)

<신설>

제43조의3(이행강제금) ① (생략)

②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같은 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

1. ~ 10.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43조의3(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양도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관리권자는 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양도의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⑤ 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양도의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관리권자는 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업무를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 그 구조고도화사

업을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삭 제>

<삭 제>

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

	<u>「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 26조까지에 따른다.</u>
--	---

신 · 구조문대비표

– 163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 ① ~ ⑥ (생략) ⑦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생략) 제37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	제18조(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삭 제> ⑨ (현행과 같음) 제37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

매 부과금) ① ~ ⑥ (생략)	매 부과금)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석유대체연료의 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 · 충당, 과다환급금의 징수 및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에 관하여는 <u>제18조제7항·제8항</u> ,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 중 “제18조”는 “제37조”로, “석유” 는 “석유대체연료”로 보고, 제 19조의2 중 “제19조”는 “제37 조”로 보며, 제20조 중 “제18 조”, “제19조” 및 “제19조의2”는 각각 “제37조”로 본다.	⑦ ----- ----- ----- ----- ----- <u>제18조제7항</u> ----- ----- -----, ----- ----- ----- ----- ----- -----.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허가 등의 의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 또는 지정(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u>제2항에 따라</u>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허가 등의 의제) ① ----- ----- ----- ----- ----- ----- 허가등의 의 -----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 -----.
1. ~ 15. (생략)	1. ~ 15. (현행과 같음)
②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그 공사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u>	<u><삭 제></u>
③ (생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u><신 설></u>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u>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 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 지에 따른다.</u>
--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24조의6(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24조의2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u> <u>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u>	<u>제24조의6(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u>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허가등의 의제 등) ①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신고·지정·등록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허가등의 의제 등) ① ----- ----- ----- ----- ----- 허가등의 관계 ----- 미리 협 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 -----.
1. ~ 17. (생략)	1. ~ 17. (현행과 같음)
② 허가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신청 시에 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같은 법 제24조제4항 후단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 서류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	<삭 제>

<u>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같은 법 제24조제4항 후단은 제외한다)에 따른다.</u>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3(관련 인·허가등의 의	제) ① 시·도지사가 제98조제1	제7조의3(관련 인·허가등의 의	제) ① -----	
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 권	한을 위임받거나 시·도지사가	-----	-----	
허가권자인 태양광 발전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	-----	
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	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	-----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	-----	-----	
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	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시·	-----	-----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인가·	허가·승인·면허·협의·해제	-----	-----	
·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	-----	
<u>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u>	<u>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u>	<u>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u>	<u>장과 미리 협의한 -----</u>	
<u>서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u>	<u>으로 본다.</u>	-----	-----	
1. ~ 21. (생략)		1. ~ 21.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u>	<u>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업</u>	<u><삭 제></u>		

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르고,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삭 제>

② 인·허가등의 -----
----- 제1항-----

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⑥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u> <u>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u> <u>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u> <u>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통합하여</u> <u>고시하여야 한다.</u>	----- ----- -----. <삭 제>
--	--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전시시설 건축시 허가 등의 의제) ① <u>전시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동의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u>	제27조(전시시설 건축시 허가 등의 의제) ① <u>전시시설에 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u> ----- ----- ----- <u>같은 법 제11조제5항</u> ----- ----- ----- ----- <u>관하여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u>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u>전시시설에 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제4항</u>	② ----- ----- ----- ----- <u>같은 조 제4항</u> ----- ----- -----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검사 또는 신고(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3. (생략)

③ 허가등 및 검사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시시설의 건축허가신청 및 건축신고와 사용승인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령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하여 검사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
-----.

1. ~ 3. (현행과 같음)

③ 허가등 및 검사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및 검사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지정·협의·신고 또는 면허(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u>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u>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 ----- ----- ----- ----- ---- <u>인·허가등의</u> ---- ----- <u>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u> ----- -----.
1. ~ 18. (생략)	1. ~ 18. (현행과 같음)
② <u>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사업자의 공사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u>	② <u>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u>

<u><신 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 26조까지에 따른다.</u>
--------------------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결정·허가·승인·심사·인가·신고·면허·등록·협의·지정·해제 및 처분 등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대부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 ----- ----- <u>경우</u> ----- ----- ----- ----- ----- ----- ----- 한다)에 관하여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u>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 서는 해당 인·허가등</u> ---. ---- ----- -----.
1. 삭제	
2. ~ 8. (생략)	2. ~ 8.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경우 실시계획의 사업 내용이 관계 법령</u>	<u><삭 제></u>

에 적합하고 공익을 현저히 해
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그 기간에 의견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
어진 것으로 본다.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른 인·허가등 의
제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기
능 및 운영,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및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의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④ 제3항-----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
제의 기준·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
26조까지에 따르고,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
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
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
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
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삭 제>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u> <u>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u> <u>그 처리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u> <u>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u> <u>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u> ⑦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u> <u>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u> <u>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u> <u>한다.</u>	<u><삭 제></u>
---	---------------------------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u>공사가 제16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 또는 인정(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u> 1. ~ 18. (생략) <u><신설></u>	제16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① <u>공사가 제16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인정 또는 협의(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았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며, 산업통상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u> 1. ~ 18.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u>

	<u>제4항 전단 중 “20일”은 “45일” 로 한다.</u>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5(이행강제금) ①·② (생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의5(이행강제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삭 제>

⑥ <u>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u>	<u><삭 제></u>
⑦ <u>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u>	<u><삭 제></u>